
2019년 20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2019.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 」 회의

〈회의개요〉

- ◆ 일 시 : 2019. 12. 3.(화) 10:00 ~ 11:30
- ◆ 장 소 : 시청 본관 7층 공용회의실
- ◆ 참 석
 - 심의위원 : 정호경, 심영섭, 이상희, 이주언, 최진수
 - 배 석 : (간사) 정보공개정책과장, (서기) 정보공개팀장
- ◆ 안 건 : 이의신청 1건, 사전심의 1건
 - (2019-66)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 (1차~4차)
 - (2018-67)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
- ◆ 심의결과(안건 순 배열)
 - (2019-66) : 기각 - 비공개
 - (2018-67) : 원안가결

【 개 회 】

〈○○○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제2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입니다. 오늘 심의회는 심의 위원으로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2건으로 이의신청 1건, 사전심의 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안과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9년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2019-66 이의신청 】

안건명 :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
(1차~4차)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19-66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팀장>

- 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정비과 ○○○○○○팀장 ○○○입니다.

<○○○ 주무관>

-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 주무관 ○○○입니다.

<○○○ 위원장>

- 간사는 소관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2019-66호 주거정비과 소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 공정회의 개최 결과

보고'에 대한 제1차부터 제4차까지의 결재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소관부서에서는 본문 중 일부와 붙임 전부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한 비공개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의신청하여 본 심의회에 이의신청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안건 소관부서 팀장은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팀장>

○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질문해 주시면 그때그때 저희가 왜 비공개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본 안건은 ○○○ 위원님이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지금 이 연구가 아직 안 끝난 것이죠?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그리고 2020년 6월에 공청회를 준비하시면 그때 연구가 끝난 결과도 발표하시는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여기서 보면 부분공개를 하셨다고 하는데 부분공개한 내용을 보면 굵은 박스에 들어있는 내용은 왜 비공개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개발 관련정보가 비공개 유형으로 나온 것이 하나 있었고. 지금 이분들이 중간 보고서를 제출했나보죠?

<○○○ 팀장>

- 아닙니다. 아직 초창기입니다.

<○○○ 위원>

- 여기 저희한테 제출하신 것에 지금 비공개 내용이 본문하고 붙임이 있는데요. 붙임에는 회의자료고, 그다음에 본문 중에서 ‘연구개발 관련 정보는 비공개하겠다’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 팀장>

- 제가 이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드려도 될까요?

<○○○ 위원>

- 네.

〈○○○ 팀장〉

-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는데 그 보상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업보상은 4개월, 주거이전비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현장에서는 그런 보상금액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보상을 많이 해 주게 되면 그런 보상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 용산사태를 비롯해서 재개발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재개발을 할 때 이 보상금액이 적절한지를 알아보자. 그런데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1인당 1억을 받았다 하면 그 이후에 들어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자’. 그런 조사를 하려고 하면 조합의 협조가 없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조사 단계에서는 조사 자체가 비공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조합에서 협조해줄 리도 없고요. 초창기인데 정보 자체를 아예 조합에서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비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

- 제가 이해를 완전히 못한 것은 지금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비공개 자료가 있고 부분공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분공개 자료는 회의 개최 결과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렇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리고 비공개 자료들은 다 회의와 관련된 첨부물들입니다. 1차 회의자료, 2차 회의자료, 3차 전문가 설문지 검토, 4차는 참석자 명부, 그것을 비공개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본문에서 지금 비공개하겠다는 것은 그 4가지를 비공개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리고 부분공개는 회의결과에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하겠다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알겠습니다. 전문가 참석자 명부는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문가 설문지 검토내용 같은 경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완전히 완결이 안 된 것이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 주무관>

- 네. 검토 중인 내용이어서 저희가,

<○○○ 위원>

- 설문지가 완결된 설문지가 아니라서요?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럼 여기서 구체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완결이 안 되고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주무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저희가 당초 잡았던 부분이 회의를 하다 보니까 방향이 선회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지금 1차부터 4차까지만 공개된다고 하면 외부에서 볼 때 어느 일부분만 본다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요.

지금 협조도 잘 이루지지 않고 그래서 방향을 최대한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게 공개가 된다면 굉장히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 청구인이 생각하는 것은 아마 서울시가 결론을 내고 이런 것을 준 것이 아닌 가라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런 것을 우려하시는 겁니까?

〈○○○ 팀장〉

○ 공개를 하면 조합에서 저희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못 받습니다. 그 자료가 오픈되어 있는 관리처분 인가자료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

에 이주촉진이라고 해서 이주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한 사람을 이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보상이 필요한가를 실질적인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데 그런 데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협조가 잘 안 돼서 용역이 더디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 위원>

○ 지금 보상기준에 대한 기준표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까?

<○○○ 팀장>

○ 있습니다.

<○○○ 위원>

○ 지금 그게 실제로 집행되는 것과 기준표는 차이가 많다는 말씀이신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Redacted text block]

<○○○ 위원>

○ 그것을 지금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용역을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팀장>

○ 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 중에서 빨간 박스 부분은 비공개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맞죠?

<○○○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이 공정회의가 있었다는 것은 공정회의 개최 결과보고서가 요런 문서가 만들어졌고,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것을 알고 보자라고 하신 겁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장>

○ 그런데 이 빨간 것을 다 지우고 보여주면 그냥 '회의했다'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세 사람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이네요?

<○○○ 팀장>

○

[Redacted text block]

〈○○○ 위원장〉

- 회의결과를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부분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박스를 제외하면 결국 의미는 이 세 사람이 모여서 1차 회의를 했다는 그 정도의 의미, 공개는 그것밖에 없네요?

〈○○○ 팀장〉

- 네.

〈○○○ 위원〉

- 그런데 부분공개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부분공개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그냥 비공개된 것이잖아요. 첨부자료는 왜 비공개하셨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공정회의 개최에 대한 결과보고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연구책임자 성함을 뺀 그것은 이해하는데 회의 안건, 회의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요약한다든지, 최소한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다 비공개한다라면 사실상 비공개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주무관〉

-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사실 1, 2차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과업수행 경과보고 이런 부분은 공개할 수 있

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주민의견조사 대상 선정’ 이런 부분이 저희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 커서 외부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외압도 들어올 것도 우려가 되고, ‘이것을 조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3차하고 4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대상 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대한 조사냐가 관심이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 외에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 이게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체로는 정비사업 전체의 손실보상 문제를 다시 한 번 시스템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까?

<○○○ 팀장>

- 후자입니다.

<○○○ 팀장>

- 네.

<○○○ 위원장>

- 그러면 큰 전체에서 보면 이것은 아주 일부분일 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용역

의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본질은 용역 이 과정에서 회의 한 번 한 것을 보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 팀장>

○ 네.

<○○○ 위원>

○ 걱정하시는 것은 이 조사구역에 대한 정보들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이 민원 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그게 지금 우려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만 비공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개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공청회 가면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 필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비밀인 것이지 않습니까? 과정을 비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무관>

○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과제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방향으로 갈 지, 저 방향으로 갈 지 지금 두들겨보고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 부분 하나만 딱 봤을 때는 충분히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저희도 업무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팀장>

○

[Redacted text block]

<○○○ 위원>

○ 지금 조합 측은 데이터를 주지 않아 가지고 전혀 협조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팀장>

○ 저희가 “비공개하겠습니다. 구역명은 제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지금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 위원>

○ 팀장님, 그렇다고 해서 1차부터 4차까지 정보를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보를 줄까요? 그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 팀장〉

- 저희 주무관이 구청 담당자하고 몇 번 가서 조합장에게 사정하고요, 그래서 일부구역은 100% 다는 아니지만 조금씩 받은 것도 있습니다. 조건이 비공개입니다.

〈○○○ 위원〉

- 그것은 물론 비공개이죠. 그런데 저는 이 회의 결과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외하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용역추진일정 관련이라든지, 어디를 하겠다든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내용들은 공개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것이죠.

〈○○○ 주무관〉

-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1차 같은 경우 회의 안건에서 ‘과업 수행 경과보고’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공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반적인 보통 회의의 진행되는 내용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만 나오면 또,

〈○○○ 위원〉

- 아마 또 신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공개하실 수 있는지를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부분공개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비공개 대상 범위가 좁혀져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 이게 언제 끝이 납니까?

<○○○ 팀장>

- 지금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은 못 드리고, 일단 계획은 내년 8월입니다.

<○○○ 위원장>

- 도시연구소가 용역을 수주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공정회의라는 것은 도시연구소하고 주거개발팀하고 같이 계속 회의를 해 나가는 것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회의 결과를 보여주는 순간 그게 어떤 방향으로 회의가 흘러가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위원>

- 4차에서 첨부한 참석자 명부는 참석자 누구고, 서명이 들어있고, 계좌번호가 들어있고 해서 민감한 정보인 것 같고요. 그런데 3차에서 '전문가 설문지 검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질문한 양식만 들어있고 질문한 답변에 대한 것은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답변이 안 온 겁니까?

<○○○ 팀장>

- 일부 온 것은 용역사가 갖고 있고요,

<○○○ 위원>

- 그래서 그 설문 답변은 일단 제외하고 질문한 내용, 어떤 것을 설문조사를 했다. 요것이 만약에 공개되면 어떤 공익상의 불이익이 올 수 있을까요?

〈○○○ 주무관〉

- 설문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 네, 질문내용.

〈○○○ 주무관〉

- 저희가 그때 회의내용은 아예 용역사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가져왔다가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이것은 제외하고 더 넣고 한 이런 부분이,

〈○○○ 위원〉

-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공개했을 때 과연 어떤 공익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정회의라는 것이라든가, 앞으로 개최될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집하기 위한 자료수집인데 이 자료수집을 할 때 이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데 결과를 도출할 때 자료 수집할 때 왜 이런 요소들을 고려 안 했나라고 또 시비가 붙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겠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고려요소도 설문조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하면 나중에 와서 다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그것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고.

대신에 그렇게 하면 이것을 넣어달라, 저것을 넣어달라 말이 많고 좀 어렵고, 시간 걸리고, 복잡한 그런 단점은 있을 텐데 요것을 그렇게 공개를 만약에 해주면 예컨대 이쪽 진영에서 '우리 것은 왜 설문조사를 안 하느냐. 이것도 조사해 달라'. 반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사하는 것이야 한다고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순기능이 좀 더 강화되지 않는가. 이것은 공개해도 크게 나쁠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 팀장>

-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조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 뿌리기 전에 초안입니다.

<○○○ 위원>

-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초안입니까?

<○○○ 팀장>

- 네.

<○○○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2차 자료를 보면 사례조사현황, 과업내용이 이렇고, 요약되어 있고, '조사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 이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것인데 이 조사방법이 만약에 틀렸으면 이런 방법을 하나 더 추가해서 조사를 해 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이것을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조사방

법 중에서 데이터 조사 말고 또 이런 조사가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과업내용에 의해서 이런 것을 더 추가를 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논의들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은 오픈되어 있는 상태일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어떤 공익상의 불이익이 초래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 주무관>

-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조합이나 아니면 세입자 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조합 쪽에서는 민감한 자료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요청을 드리는데 어느 조합은 이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어떤 조합은 안 해 주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 내용은 또 제외하고 협조를 해 주려는 데도 있고, 굉장히 가지각색이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방향 자체가 공개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 연구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질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조사내용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는 자료다.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1차 자료는 다시 거슬러가서 보면 향후 수행계획도 그런 내용입니까? 2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한국도시연구소에서 해 놓은 주요 회의경과라든가, 문헌수집사례 연구, 사례조사 기획,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연구방향을 이렇게 잡겠다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조사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인 것 같은데, 향후 수행계획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사방향을

이것을 보면 잡힌다는 말씀이시죠?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렇다면 첨부자료는 4개 다 제가 여쭙봤고, 그 앞에 회의 결과보고 4개 1차부터 4차까지 쪽 보면 아까 주심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무슨 회의를 했는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회의 안건 정도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회의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방향성 같은 것도 이것에 의해서 노출되지는 않고. 다만 뒤에 대해서 회의했다는 이 정도는 알아야, 지금 껍데기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달라고 했던 것 중에서 만약에 붙임자료를 하나도 안 준다면 적어도 이 회의 결과보고 1차에서 4차 이 자료는 줄텐데 이 자료는 봐 가지고는 제목만 되어 있지 무슨 회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게 지금 되어 있어서 회의 안건 정도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 결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회의 안건은 괜찮습니까?

<○○○ 위원장>

○ 이게 지금 우리 위원회 회의처럼 뭔가를 결정하는 회의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들을 하는 회의이면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보면 이 회의의 본질은 도시연구소가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방향이 잘 나가도록, 어 그러지지 않도록 지금 주거개발팀하고 계속 그 용역방향과 내용을 중간 중간 점검해 가면서 조정해 가는 회의인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장〉

- 그 회의를 일일이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 할 때마다 ‘이런 회의 했다. 이런 회의 했다. 이런 회의 했다’라고 이렇게 공개하면서 할 성질인가요? ‘이번에는 이런 안전으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안전으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용역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로 전문가가 이런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개해 주고, “이렇게 설문조사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다시 시민들한테 공개하고 의견을 받는 것이 타당한 용역수행 방법인지도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뭔가 이 과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용역 수행자와 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신뢰를 하고 믿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왜 이렇게 했나라고 반박하는 것은 몰라도 일일이 그 과정 자체에서 ‘네가 며칠날 무슨 회의를 했냐. 안전은 뭐냐.’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저는 토론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의문이 듭니다.

〈○○○ 위원〉

- 안전부분을 쭉 보니까 무슨 회의를 했는지가 드러나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조사방법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이 대체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런 것을 했고,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붙임자료를 조사방향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회의안전만 쭉 읽어도 대충 잡힐 수는 있겠네요. 같은 취지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런데 보통 용역수행을 할 때 공정회의를 서울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합니까?

<○○○ 팀장>

○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정회의를 열심히는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자료를 못 구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있는 용역결과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은 말로는 다 됩니다.

<○○○ 위원>

○ 그러면 다른 용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 팀장>

○ 아니요. 그렇게 안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 용역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 하는 논의를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보다 많이 있습니다.

<○○○ 위원>

○ 공정회의라고 하는 것이 용역수행과정의 하나인 것이죠?

<○○○ 팀장>

○ 네.

<○○○ 위원>

○ 별도 독립해서 서울시의 업무라는 것보다는.

<○○○ 팀장>

○ 네, 그것은 아닙니다.

- 저희 용역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다른 것은 이것만큼 비공개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 위원장〉

- 도시재개발 이런 데는 돈이 걸려있어서 민감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냥 일반 우리 정보공개 용역 이런 것보다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 위원〉

- 원래 공정회의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조사하는데 그 대상지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이것은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개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 팀장〉

- 이런 것이죠. 주민의견 조사를 하는데요. 예컨대 주민 A라는 ‘당신은 보상 얼마 받았냐’.

〈○○○ 위원〉

- 그런 내용은 하나도 공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전을 공개한다면 이 사람으로서는 지금 껍데기만 받은 것인데 적어도 무슨 회의를 했다 정도는 그 쪽에서는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여기 안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면,
 [REDACTED], 이 2가지만 딱 드러납니다. 그런데 공개를 이런 내용으로 회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하면 일단 무슨 회의를 했다는 것 정도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회의를 했을까라는 그런 온갖

의구심이라든가 의심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일단 제외되고 이런 회의를 했구나.’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습니다.

〈○○○ 주무관〉

- 저희가 청구인에게만 공개하는 것이나 아니라 전체 시민한테 저희가 하는 것이고, 이 용역 자체를 저희가 각 구역에 가서 할 때 ‘이것은 비공개입니다. 협조 좀 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 위원〉

- 예컨대 4차에는 안건이 없고요 1차, 2차, 3차만 있는데, 1차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회의안건에 있는 내용을 공개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 주무관〉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방향성이 나와 있어서 저희가 ‘과업수행 경과보고’ 이런 문구까지는 공개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뒤에 ‘향후 수행계획’ 이런 일반적인 내용은 다 가능한데 이런 특정 저희 방향성이 나타나 있는 단어는,

〈○○○ 위원〉

- 향후계획에 벌써 주민조사를 위한 대상지 선정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개했으면 저것도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비공개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 주무관〉

- 네.

〈○○○ 위원〉

- 그래서 이것은 내용이 보이니까 향후계획도 비공개로 하고. 그럼 회의안건만 보면 주민의견 조사하겠다는 것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을 공개해도 해서 뭐가 나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 주무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을 저희가 좀,

〈○○○ 위원〉

- 방향성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 위원〉

- 회의 내용들이 지금 1차, 2차, 3차, 4차 모두 회의 결과에 나와 있는, 로마 숫자 2번에 나와 있는 대상이 문제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이주 초기지역에 해당되는 구역들은 아직도 갈등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조사를 본인들도 정하는 것이고, 또 거기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합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고, 또 그 지역이 아직도 지금 분쟁 중인 문제는 자기 방어권 행사를 하는 데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더 이상 이 용역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잖아요.

〈○○○ 팀장〉

- 네.

〈○○○ 위원장〉

- 조금만 제가 진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공개해도

되냐, 안 되냐 이 논의는 조금 이미 했던 것 같고요, 또 여쭙봐도 똑같은 답변이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것을 따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공정회의 자체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더 크게 우리가 판단해야 해 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회의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요런 문제들에서 어느 부분까지 공개하고, 어느 부분은 비공개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순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 위원>

-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정회의 결과보고가 공개되어 있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회의 자체가 무조건 비공개 대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 법률 9조1항5호에 해당하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면 11월까지 해서 일단 이 계획상으로는 주민의견이나 전문가 설문은 끝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 주무관>

- 안 끝났습니다.

<○○○ 팀장>

- 제가 조금 전에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성패는 얼마나 자료를 확보하느냐 인데요,

<○○○ 위원>

- 그럼 예를 들어 전문가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설문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2019년 9월이라고 되어 있고, '설문지를 작성하시어 9월 22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까?

〈○○○ 주무관〉

- 이것은 당초 초안이어 가지고 날짜는 바뀌었고, '이렇게 받겠습니다'라고 날짜를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날짜가 바뀔 것 같습니다.

〈○○○ 위원〉

- 그럼 아직 전문가 설문 조사 중입니까?

〈○○○ 주무관〉

- 네, 계속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지금 저희는,

〈○○○ 위원장〉

- 제가 조금만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정회의 결과보고가 올라온 것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이런 것은 공개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자체로 당연히 공개를 전제로 하고 이 부분에서는 뭘 공개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진행과정이 한 가지 의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 회의, 정말로 제일 좋은 것은 여기에서 만약에 공개하면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비공개하고 하는 이것을 다 따져보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까지 위원회가 정말로 세부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조금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왜 공개 안 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공정회의 자료를 공개할 것이냐, 공개한다면 회의 안건, 그다음에 결과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담당자한테 기본적으로 결정권이 있다고 우리가 전제하고 그 결정이 과연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겠는지, 그런 관점에서 큰 틀에서 방향을 결정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 그런데 부분공개 여부를 만약에 결정하려면 결국에는 해당내용이 연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지가 조금 판단이 불가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 위원장>

-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의 안건부분을 공개 안 했는데 회의 안건부분, 회의 결과부분, 향후계획 부분,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지 ‘회의 결과 중에서 이 부분’ 이렇게 지금 4차 회의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 안건을 공개해라라고 결정하면 회의 안건은 공개하는 것이고, 그럼 회의 결과 부분 중에서 ‘이 부분까지 공개하고 이것은 왜 안 했냐. 이걸 안 하는 공익이 뭐냐.’ 이렇게 따져서 하기까지는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주는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위원>

- 혹시 회의를 어느 정도 더 진행할 예정인지 대충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느 정도 더 할 것인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면서요?

<○○○ 팀장>

- 내년 8월까지입니다.

<○○○ 위원>

- 내년 8월까지니까 4차가 아니라 계속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회의안건 같은 것이 오픈되면 앞으로도 계속 오픈되어야 해서 진행과정이 계속 오픈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 돼도 큰 무리는 없는데 이것을 공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5차, 6차, 7차까지 계속 공개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프로세스나 방향 같은 것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

- 그러면 청구인이 청구를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공정회의 전체가 다 비공개가 아니라 뭔가 지금 공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야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구나’ 정도를 알고 ‘이것에 대해서 정보를 특정해서 그 결과를 달라’,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주무관>

- 그것은 아니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아마 그쪽 부분에 사연이 있으셔서 가지고 손실보상이라든지,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이라든지 정보공개를 많이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딱 그 '손실보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가지고 아마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 이미 부분공개 했었다는 말씀이죠?

<○○○ 주무관>

- 네.

<○○○ 위원>

- 질문 다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 우리가 의논을 하게 나가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 퇴장)

<○○○ 위원>

- 저는 처음에 이것을 비공개로 아예 했더라면 큰 문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이미 공개해 버린 상태에서 지금 부분공개를 결정을 해서, 아마 용역결과를 어차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부분공개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분공개 범위 관해서는 지금 이렇게 공개해 놓은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회의 결

과와 향후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 4차 회의에서 향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 안전까지는 공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차는 없지만 회의 안전까지는 부분공개를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첨부물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개발 문제는 작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유출됐을 때는 그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것 같습니다. 샘플조사인데 샘플조사도 협력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첨부물은 비공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부분공개 의견에 동의하는데, 다만 회의 안전은 공개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부분공개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 위원님은 안전 부분은 공개하라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비공개에 동의고. 그러면 비공개는 결정과정 중에 있는 사항으로 5호 사유겠죠.

<○○○ 위원>

- 네, 맞습니다.

<○○○ 위원>

- 이 용역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정회의이고, 그리고 워낙 이 회의내용이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래서 비공개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전부 다 기각 의견입니다. 그래서 회의결과 내용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일단 지금 연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보이고
요.

그리고 회의 안건의 경우에도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용역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 같
은 것들을 논의했을 때 안건 자체만으로도 '계획이 추진되고 있느냐. 왜 추진
되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지 않나 싶어
서 저는 기각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결론은 비공개 의견인데, 일단 첨부자료에 대해서는 주심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안전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여쭙았는데, 이게 아직 내부 검
토과정에 있는 단계가 아닌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개해도 무리는 없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진행될지.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계속 공개를 해 나간
다면 첨부자료를 비공개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프로세스가 다 보이고 그래서 내부안전도 공개를 안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
겠냐는 생각이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부분공개된 마당에 이것만 달랑 더 공개한다는 것도 모
양새가, 만약에 공개 안 했다면 다 같이 공개하면서 요것까지 포함해서 공개
하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요것만 추가공개 하기에는 상대방이
얻는 것은 별로 없고 이쪽에서는 노출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노출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위원〉

- 저는 이게 어차피 내년에 연구용역이 끝나면 다 공개가 될 예정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연구용역 중에서 아예 그 결과 자체를 비공개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안은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은 저도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회의 결과에서도 지금 주민의견 조사가 있고, 전문가 의견이 있고, 데이터 조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담당부서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정보수집의 어려움 같은 경우에 데이터조사나 주민의견 부분에서 그런 업무수행이나 연구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전문가 의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특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의견을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회의 결과 중에서도 예를 들어 전문가 의견조사와 같이 5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를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

- 첨부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의견은 맞습니까?

〈○○○ 위원〉

- 네, 그것은 동의합니다.
- 결과보고에서 안전과 회의 결과까지 공개의견입니다.

〈○○○ 위원장〉

- 네, 일부를 공개하신다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5명 중 3명이 비공개 의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건을 기각한다는 의견이므로 기각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66호는 기각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안번호 2019-67 사전심의 】

안건명 : 사전공표 행정정보 정비 및 추가(안)

〈○○○ 위원장〉

- 의안번호 제2019-67호 정보공개정책과 사전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 주무관은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철 주무관〉

- 정보공개정책과 주무관 원기철입니다.

〈○○○ 위원장〉

- 간사는 안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 의안번호 제2019-67호 정보공개정책과 소관 사전심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을 국민들에게 공표·공개해야 하며, 서울시 정보공개 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전공표의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 목록을 변경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전공표 대상이 되는 행정업무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 확대 및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본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 소관부서 주무관은 이의가 있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없습니다.

〈○○○ 위원장〉

- 본 안건은 제가 주심위원으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사전공표 제외목록과 추가목록 이런 것들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사전심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전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 안건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다 보는 것은 무리고, 또 그것까지 검토를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사전심의니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면, 사전공표 제외목록이 49개 업무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이 종료돼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 특별히 갱신 곤란이라든지, 해당 홈페이지 직접 접속 용이, 이런 형태로 사전공표 제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왜 이때까지는 사전공표 하다가 이것은 왜 제외하기로 했냐라는 것이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업종료는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죠.

〈원기철 주무관〉

- 일단 투출기관 업무 같은 경우에는 투출기관도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각자 홈페이지에다가 사전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투출기관이 지금 23개 기관인데 그중에 한 5~6개 정도 기관만 서울시 사전공표에 끌고 들어와서 공표할 기준이 없고요, 각자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기 때문

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럼 중복적으로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었고 여기에도 사전공표를 하고 있었는데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는 제외하자, 그렇게 된 겁니까?

〈원기철 주무관〉

- 투출기관 홈페이지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홈페이지에 찾아보면 있는데 사전공표로는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끌고 와서 링크해 와서 공표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이번에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 그러면 사전공표 안 하는 것들은,

〈원기철 주무관〉

- 사전공표까지는 아니지만 홈페이지에 게시관 같은 데에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 기관인데 그중에 일부 기관 것만 시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기가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 그러면 투출기관 중에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 남아있는 것과 뺀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별한 겁니까?

<원기철 주무관>

- 이번에 시 사전공표 항목에서 투출기관 것은 다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 그다음에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 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링크가 되어 있고, 지금 다 그런 식입니다. 따릉이 안내까지도 따릉이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링크가 되어 있어서 따릉이 이용 관련 사항이 궁금하면 따릉이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굳이 시민들 입장에서 사전공표 들어와서 거기를 타고 다른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찾아보기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럴 이유도 딱히 없어서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체육회라든지 시티투어 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 갱신 곤란은 어떤 겁니까?

<원기철 주무관>

- ‘재정 관련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받은 감사결과’ 이것은 감사원한테 재정 관련해서 감사를 받은 지도 꽤 됐고, 앞으로 언제 받을 지도 알 수 없고. 사전공표라는 것은 주기를 정해서 갱신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감사원한테 재정 관련해서 감사 받은 것은 ‘15년이 마지막입니다. ‘15년 이후로 지금까지 감사 받은 것도 없는데 이것을 그나마 최신자료라고 하고 공개하고 있는 것도 안 맞다 싶고요. 지금 이게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료가 ‘15년 것이 마지막이라서 이것을 저희 쪽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늘푸른자립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구하고 강북구에서 하나씩 해서 두 개 뿐인데 앞으로 더 지을 것도 아니고 이대로 끝이라서 갱신이 어려운 것이고요.

‘한옥보존 및 진행계획’ 같은 경우도 약간 수립한지가 꽤 된 계획이고, 앞으로 언제 다시 계획을 수립할 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갱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홈페이지상에서 삭제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정보소통광장에 사전공포에 들어가면 ‘정비된 항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제외하는 항목들을 그쪽으로 일괄적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될 뿐이지 지금까지 올라와 있는 자료들은 찾아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것들은 다 약간 중복적인 것들이 있어 가지고 다른 항목에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라서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 42번 이것은 방문열람만 가능하더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원기철 주무관〉

-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자료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용량이 너무 커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가 없어서 원하면 와서 방문하는 식으로만 열람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일회성 계획이라서 갱신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것은 제외하려고합니다.

뒤에 보시면 공공주택 재건축 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어서 이것은 제외하려고합니다. 정보화전략위원회 개최결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결과를 따로 공개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전략위원회만 따로 떼어내서 사전공포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외하려고하고요.

그리고 매입한옥 위탁자 선정계획이나 선정 밀집지역 지정현황은 바뀌게 될 홈페이지에 공시·공고를 아예 따로 공고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사전공포에서는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반려견놀이터 설치현황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도 자기들이 추정치만 갖고 있는 뿐인데 이것을 정확한 정보다라고 해서 미리 공개하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제외하려고하는 겁니다.

<○○○ 위원>

- 반려견놀이터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 같은 것이 아니죠?

<원기철 주무관>

- 네.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또 조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시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 위원>

- 47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48번은 뭘니까? 별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공개를 해 왔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공개되고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를 안 한 것이네요?

〈원기철 주무관〉

- 네. 그러니까 개별부서에서 민간위탁업무가 있으면 수탁기관을 2회 연속 같은 기관에 위탁하게 되면 공개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업무가 100개가 넘어가고 담당부서가 수십 개인데,

〈○○○ 위원〉

- 지금 우리한테 주신 붙임자료들, 사전공포 추가목록이라든가, 변경목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포됩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번 같은 경우 방문열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변경된 내용만 되어 있지 사유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일회성 계획이어서 용량 과다라는 것은 좀 적합한 사유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앞에서 본 갱신 곤란이라는 사유로 되는 것 아닙니까? 갱신 곤란으로 인해서 방문열람만 가능하다고든가. 방문열람만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원기철 주무관〉

- 사유를 적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29번에 서울시 앱개발센터 운영현황을 지금은 투자창업과에서 하는데 이 업무를 디지털재단으로 아예 넘겨준다는 말씀이십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디지털재단이 투출기관에 해당되는 겁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그래서 투출기관 업무가 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 위원〉

○ 그러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곤란한 것들은 투출기관에 넘겨버리면 공개 안 해도 되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원기철 주무관〉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

○ 왜 디지털재단이 고유업무로 전환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가 앱 개발한다는 것은 서울시가 앞으로 앱을 계속 만들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리는 수많은 앱을 만들 텐데 그 현황들은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재단의 고유업무로 전환한다는 것이 디지털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그런 것인지. 관리 업무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시죠?

〈원기철 주무관〉

- 네. 업무가 부서에서 하던 것이 투출기관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간혹 있는데 그것이 왜 넘어갔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 위원〉

- 앞에 것들은 이해가 다 갈 것 같습니다. 관광안내소 현황이나 이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 위원〉

- 반려견놀이터는 누가 설치하는 겁니까?

〈원기철 주무관〉

- 지금 시 사전공포 항목에 올라와 있는 것은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조성한 것이고요. 지금 반려견이 계속 늘어나서 자치구에서 개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에서 조성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 위원〉

- 민간조성은 제외하고 시에서 조성하는 것만 공포할 수는 없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식적인 것은 3개뿐인데,

〈○○○ 위원〉

- 앞으로 그것은 주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그런데 언제 당분간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서,

<○○○ 위원>

○ 민간이 하는 것은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투출기관 업무를 일괄제외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출기관도 공공기관이니까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7조에 따라 사전공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출기관에서 사전공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공표를 하는 것 같고, 일부는 그냥 어디인가에 공개는 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어서 서울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전공표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또 조금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출기관 업무라고 일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지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데, 예를 들어 7조에서 공공기관이 이런 경우에는 공표를 해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사유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거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런 정보들은 사전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7번 같은 주택공급계획 같은 경우에 이것은 일단 만약에 서울시가 있는 정보라면 저는 사전공표의 대상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서울주택공사의 업무이고, 여기서 사전공표를 하고 있다면 굳이 양쪽에서 사전공표를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혹시 확인이 되는 것일까요?

<원기철 주무관>

-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주택도시공사의 사전공표,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지금 여기에 투출기관업무 일괄제외라고 되어 있는 투자기관이 8개 기관인데 투출기관이 지금 서울시에 23개입니다. 내년 되면 TBS도 들어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데 어떤 기관의 어떤 업무가 공개할 만한 업무냐 해서 시 사전공표항목으로 끌고 오기가 그 기준이 되게 어렵습니다. 23개 기관에서 자기네들이 '이거 중요하다' 그런 것을 그 기관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시에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판단일 뿐이지 끌고 들어오다 보면 개수는 엄청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자기네들이 이 투출기관도 각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들이고 해서,

<○○○ 위원>

- 투출기관들이 지금 서울시와는 별도의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 공공기관에 해당 되지 않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맞습니다.

<○○○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개라는 것은 서울시 것에 대한 공표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아닙니다. 투출기관의 업무인데 이런 것들은 시에서 사전공표 할 만하겠다 해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간사>

○ 지금은 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외하겠다는 것이죠.

<○○○ 위원장>

○ 링크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원기철 주무관>

○ 네. 링크되어 있습니다.

<○○○ 위원>

○ 일종의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것이죠.

<○○○ 위원장>

○ 그러니까 링크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뭔가 투출기관 업무를 다 파악해서 사전공표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놔둘 지, 뺄 지를 논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링크해서 하면 투출기관이 사전공표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그 링크가 사전공표 해서 링크가 공유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어디인가에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는 사전공표 형태로 끌고 오는 링크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기철 주무관>

○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위원>

- 지금까지는 공표대상에 넣었지 않습니까?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그런데 이제 제외하게 되는 것인데, 넣어줬을 때 시민들이 더 편합니까? 그렇다고 거기 가서 보면 되니까 뻘다고 해서 불편한 것도 지금 크게 없는 것이죠?

<원기철 주무관>

- 네.

<○○○ 위원>

- 거기서 안 했으면 거기서 안 한 것이 문제고, 공표했으면 가서 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서울시에서 지금 기관별로 공표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각 기관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추가로 더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시민들 편익이 아니라면 굳이 노력을 해서 공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이제 와서 하던 것을 왜 굳이 제외하려고합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크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기철 주무관>

- 그냥 뒤도 큰 문제는 없는데 제가 이 담당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면 이게 왜 시에서 사전공표를 하고 있어야 되나 싶은 것도 있고요, 지금 8개 기관 것만 굳이 끌고 올 필요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랑 합쳐서 가공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투출기관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어서 그냥 가져오는 것뿐인데 그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간사〉

- 배경을 살펴보면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 기조이기도 했고, 우리 각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전공표 같은 경우는 정부 행안부에서는 항목 개수, 이런 것이 정량적인 평가기준이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저희 과에서 정보공개 소통광장을 만들어서 원무 공개도 하고, 사전공표도 거기 다 공표를 하는데 사실은 서울시라고 했을 때 이 본청만이 아니라 자치구와 투출기관까지 다 서울시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인식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접근점을 주고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편익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정보소통광장에서 원무 공개도 여러 기관 것을 모아서 하고, 사전공표항목도 최대한 이렇게 투출기관하고 관련된 것 중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라면 많이 연결하는 쪽에서 그동안 진행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형평에 맞지는 않죠. 8개 기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23개로 다 확대를 하든지.

그렇려면 저희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내부 것만 해도 사실 발굴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도 있고.

평가를 할 때, 사전공표항목에 대해서 평가 지난번 들어가 보셨죠? 이게 갱신 주기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해야 되고, 샘플링을 하기는 하지만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링크 영역이 아닌 데 다른 기관 것을 링크를 해 봤을 때 갱신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이 정보에 대한 책임소재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담도 사실 가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에 새로 늘리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리를 하고 각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 위원>

○ 링크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홈페이지로 들어갑니까?

<간사>

○ 네.

<○○○ 위원>

○ 거기서 다시 또 공표한 그것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사>

○ 공표로 갈 수도 있고,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 위원>

○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바로 들어가면 시민들은 편리할 텐데,

<간사>

- 그러니까 여기다 두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접근점 하나에서 많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용도 하나가 있는 겁니다.

〈○○○ 위원〉

- 원스톱서비스는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간사〉

- 그런데 저쪽에서 관리가 잘 안 됐을 때 그것에 대한 부담은 서로 또 안게 되는 것이죠.

〈○○○ 위원〉

- 23개를 다 하기에는 지금 업무부담이 또 생기는 것이죠.

〈간사〉

- 그렇죠.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찾기 어렵고.

〈○○○ 위원〉

-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서울시가 투출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감독이 가능한 겁니까?

〈간사〉

-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해서 평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되게 작기는 하지만 저희 원 주임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원무 공개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그다음에 사전공포도 이렇게 다 조금씩 들어있습니다.

〈○○○ 위원장〉

- 그러니까 이것하고 무관하게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감독시스템은 있다는 것이죠?

〈간사〉

- 네. 산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일단 웬만하면 담당부서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주자. 기본적으로 기관 독자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실효적인,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의논해야 될 텐데 링크 걸었던 것을 해소할 것인가라는 문제니까요.

이 정도 의논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수정 가결이나 부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위원〉

- 저는 원안 가결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2번에 변경내용만 있지 사유가 없습니다. 사유라고 적어놓고 사유를 안 적으면 이것을 공개를 안 하면 우리는 알아보니까 괜찮은데 공개를 하면 사유란에 사유가 안 적혀있어서 사유를 아까 갱신 곤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두고, 그리고 괄호 열고 '방문 열람만 가능', 변경내용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 그 사유를 고치시도록 하시죠.

〈원기철 주무관〉

-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집계 결과 참석위원 5명 중 전원이 사전심의 건을 원안 가결한다는 의견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일동〉

- 네.

〈○○○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019-67호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것으로 제20차 정보공개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23분, 회의 종료】